

#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천G밸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2023년 11월 28일  
행정재경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3년 11월 15일, 금천구청장
- 나. 회부일자 : 2023년 11월 15일 회부
- 다. 상정일자 : 제24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 
제2차 행정재경위원회(2023년 11월 28일)
  -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심사, 의결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 (기획경제국장 한만석)

### 가. 제안이유

- 금천G밸리사랑상품권 운영자금의 구금고 보관·관리로 인해 발생하는 이자 등의 수익금 처리와 운영자금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사랑상품권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.

### 나. 주요내용

- 자치구 명을 포함하도록 제명 수정(제명)
-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 재정비(안 제2조)
- 상품권의 권면금액에 대한 조항 신설(안 제4조제5항 신설)
- 상품권 운영자금의 이자수익 등 처리와 안정성 확보를 위한 규정 신설(안 제4조의2 제3항 및 제4항 신설)

- 상품권 할인판매율 예외 규정 단서 신설(안 제6조제2항 신설)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#### 가. 검토보고 : 전문위원 박병규

#### 나. 검토의견

- 본 개정 조례안은 금천G밸리사랑상품권 운영자금의 구금고 보관·관리로 인해 발생하는 이자 등의 수익금 처리와 운영자금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전으로
- 주요내용으로는
  - 조례명에 자치구명이 금천구를 포함하였고
  - 안 제2조에서는 상위법에 정의되어 있는 “판매대행점”의 용어는 삭제하고 “금천G밸리사랑상품권”, “사용자”, “추가충전금”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추가함.
  - 안 제4조제5항에서는 “상품권의 권면금액은 1만원권, 5만원권, 10만원권으로 한다. 다만,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.”라는 규정을 신설함.
  - 안 제4조의2 제3항에서는 “구청장은 상품권 운영자금 중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상품권 금액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구의 재정으로 귀속하고, 다음 연도 상품권 발행 등 관련 사업에 필요한 자금으로 활용한다.”라는 규정을 신설함.
  - 안 제4조의2 제4항에서는 “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기적으로 상품권 운영자금의 변동내역 및 잔고를 확인하게 하는 등 상품권 운영자금의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”라는 규정을 신설함.
  - 안 제6조 제2항에서는 구청장이 할인비율을 별도로 정할 수 있는 경우의 단서를 규정하고 있음.

-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「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에 위배됨이 없고 2023년 2월 행정안전부에서 발간한 「2023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」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**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**

**5. 토론요지 : 생략**

**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**

**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**